하도록 하여 地方自治法 第130條의 規定에 따라 보라매病院의 酬價도 市議會의 統制를 받도록 修正되어야 하고, 이를 현행 條例의 별표에 例外規定으로 설치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細部檢討事項입니다.

改正案 第4條의 入院時 保證人 規定을 완화시켜 低所得 市民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報告드렸습니다.

○委員長 崔 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保社環境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質疑 答辯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會議進行은 深度 있는 審査가 될 수 있도록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發言 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吉原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崔 浩 네, 金吉原委員.

○金吉原委員 지금 이 問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한 質疑와 또 討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시간도 됐고 점심을 한 후에, 또 우리 私席에서 이 이야기를 擧論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緊扱動議로 停會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崔 浩 委員 여러분, 현재 金吉原委員께서 停會 요청 動議가 들어왔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01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委員長 崔 浩 자리를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發言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兪相根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崔 浩 네, 兪相根委員님.

○兪相根委員 兪相根委員입니다.

우리가 아까 深度 있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 修正된 修正案을 제가 提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立病院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內容을 다음과 같이 修正하고자 修正動議案을 提議합니다.

修正案 內容은 서울特別市立病院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중 第2條第2項 但書新設條項을 削除하고, 또한 별표 基本診療料의 1. 入院料 內容 중 病院 구분에서 綜合病院을 市立보라매病院과 東部病院으로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별표 내용은 旣已 配付한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 浩 兪相根委員으로부터 修正動議案에 대한 發言이 있었습니다. 修正動議案에 同意하십니까?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

6. 서울特別市立病院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動議案(兪相根議員 發議)

○委員長 崔 浩 本 修正動議案이 議案으로 채택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議案番號 1175號 서울特別市立病院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을 修正된 부분은 修正된 대로, 그 외 부분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은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진료수가 및 약가기준 등) 제2항 ……"다만,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의 경우 별표의 입원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병원장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를 전부 삭제하고,

○ 〈별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입원료

분 류	종합병원		병원	비 고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의료보험수가 입원료의	의료보험수가 입원료의	의료보험수가 입원료의	
가. 특 실	50할 가산한 금액	30할 가산한 금액	30할 가산한 금액	안치료는 보호자
나. 1인 실	30할 〃	10할 〃	10할 〃	측의 귀책사유가
다. 2인 실	20할 〃	5할 〃	6할 〃	없는 한 3일을
라. 3인 실	10할 〃	2할 〃	3할 〃	초과하여 징수할
마. 안치료	5할 〃	5할 〃	5할 〃	수 없다.

2. 제증명료

(단위 : 원)

분 류	금 액	비 고
가. 병사용진단서	2,000	이 표 외의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나. 상해진단서	5,000~50,000	2,000원으로 한다.
다. 사체검안서	5,000	증명발급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라. 사체부검표	20,000	요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소
마. 기발급증명사본(1건당)	500	정의 검사료를 가산한다.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서울특별시립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진료수가 및 약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진료수가(비보험수가)"를 "진료수가"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중 무료환자 이외의 자는 입원전에 보증인 1인(의료보호법에 의한 1종 및 2종 의료보호대상자는 보증인이 필요없음)이 연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서약서를, 무료환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원서약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중 일반환자(사비환자)는 수가예상액의 30%이상의 범위 안에서 병원장이 정하는 입원보증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기 본 진 료 료

1. 입원료

분 류	종 합 병 원		병 원	비 고
	보라매병원	동 부 병 원		
	의료보험수가 입원료의	의료보험수가 입원료의	의료보험수가 입원료의	
가. 특 실	50할 가산한 금액	30할 가산한 금액	30할 가산한 금액	안치료는 보호자
나. 1인 실	30할 〃	10할 〃	10할 〃	측의 귀책사유가
다. 2인 실	20할 〃	5할 〃	6할 〃	없는 한 3일을
라. 3인 실	10할 〃	2할 〃	3할 〃	초과하여 징수할
마. 안 치 료	5할 〃	5할 〃	5할 〃	수 없다.

2. 제증명료

(단위 : 원)

분 류	금 액	비 고
가. 병사용진단서	2,000	이 표 외의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나. 상해진단서	5,000~50,000	2,000원으로 한다.
다. 사체검안서	5,000	증명발급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라. 사체부검표	20,000	요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소
마. 기발급증명사본(1건당)	500	정의 검사료를 가산한다.

7.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4時 10分)

○委員長 崔 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우리 委員會에 지난 11月 22日부터 11月 30日까지 실시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를 旣已 配付해 드린 油印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보건사회위원회가 실시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및 근거

목 적

○ 시정운영 실태의 정확한 파악으로 의정활동의 내실화 도모

○ '9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획득으로 효율적 행정통제와 시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2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6조

2. 감사기간

○ 1994.11.22(화)～11.30(수) [9일간]